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8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

재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114172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838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해영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임야 2,083㎡에 관하여 2001. 2.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1971. 7. 15. 경남 의령군 C 임야 2,0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망 D의 아들인 피고는 2022. 8.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0. 1.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망 E은 망 F와 혼인하였는데 망 F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인 망 D을 데려와 입적하였고, 망 G은 망 E과 망 F 사이의 자녀이며, 원고는 망 G의 배우자이다.

다. 망 D은 본래 성을 찾아야 한다며 1980. 5. 19.경 망 E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고 1981. 1. 30.경 망 D의 호적이 말소되고 H으로 성을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에는 망 E의 묘로 추정되는 묘소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2. 18.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 계속하여 위 임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1981. 2. 18.부터 20년이 지난 2001. 2. 1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81. 2. 18.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H이 이 사건 임야를 망 E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호적이 말소되면서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가 망 E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야에 망 E의 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1975. 1. 15. 경남 의령군 I에 전입하였으나 1989. 9. 21.경 마산시 J로 전출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 근처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남 의령군 K에서 'L'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하